

[요약본]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26. 7. 3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이규현

사법정책연구원은 2026. 7. 31.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요약본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연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에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하실 때는 본 요약본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 연구의 배경

최근 법정 및 법원청사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위해 행위와 보안침해 사례는 법원보안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과거 법원에 대한 보안위협이 주로 법정 내 소란, 폭언, 단순 난동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흉기 사용, 법원청사 인근의 집단적 위협, 불법시위와 청사 침입 시도, 법정 구속 과정에서의 도주, 재판관계인에 대한 직접적 위협 등 보다 위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절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법원은 헌법상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법원의 보안은 단순한 시설경비나 출입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 기능의 실질적 수행을 뒷받침하는 사법작용의 기반이다. 법정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재판관계인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 그 영향은 개별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과 권한, 장비와 보안절차, 지휘체계와 근무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단순한 행정개선이 아니라 사법기능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현행 법원보안관리대 제도는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창설과 2014년 법원보안관리대로의 명칭 변경을 거치며 점차 정비되어 왔으나 여전히 법원경위, 보

안직, 보안관리직, 청원경찰 등 다원적 직렬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시간적·제도적 형성 과정의 산물이지만 현장에서는 업무분담의 편차, 승진구조의 불균형, 지휘체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보안업무가 점차 전문화되고 법원 운영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보안환경에 보다 적합한 조직·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II.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법원보안관리대의 형성 경위와 현재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에서 출발한다. 특히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된다.

첫째, 최근 법원 내외에서의 보안위협이 과거보다 복합적이고 위험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권한과 대응체계가 이러한 위협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장비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근거와 지휘체계, 현장대응 기준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조직 운영 구조는 다원적 직렬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무분담의 편차와 인력운영에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직렬은 법률상 별도의 근거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직렬 간 업무 배분과 책임 구조를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다. 이는 보안업무의 전문성 약화와 현장 지휘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법정 및 법원청사에서 유형력 행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현행 규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보안인력은 필요한 상황에서도 대응을 주저하거나 사

후 책임에 대한 우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유형력 행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인권 보호와 현장의 실효성 확보라는 두 가지 요청을 함께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

넷째, 최근 국회에서도 법원보안 업무의 중요성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법원보안의 문제가 더 이상 법원 내부의 실무적 과제에 머물지 않고 사법제도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 제도의 형성 배경과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 및 법원청사에서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사건·사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한 뒤 조직, 인력, 장비, 규정, 제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연구의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과 운영 근거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인력·장비·제복·사건 대응 등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이어 핵심 문제로서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유형력 행사 기준의 불명확성,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 제복 운영상의 문제를 진단한다. 그 후 외국 법원 보안조직과 국내 기관의 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단계적·현실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무자료 분석, 인터뷰, 비교법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우선 국내외 법령, 판례, 정책

보고서, 연구논문,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법원행정처 관련 부서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 내부보고서, 위기대응 매뉴얼, 인원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판장, 법원보안관리대장, 법원경위, 청원경찰, 보안관리주무관, 변호사, 집행관, 경찰관 등 다양한 업무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법원보안제도와 국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국내 기관의 보안조직 운영 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 및 현황

제1절 연혁 및 운영 근거

I. 연혁

법원보안관리대 제도는 단기간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논의와 제도 변화를 거쳐 형성되었다.

1988년에는 가칭 ‘법원경찰대’ 설치를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법원경찰대 창설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오래전부터 법원의 독자적 질서유지·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다만 당시에는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였고 법정 및 법원청사 방호 업무는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 등이 나누어 담당하였다.

이후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보안인력을 기능적으로 통합한 ‘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되었고, 2014년에는 ‘법원보안관리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은 단순한 호칭 수정이 아니라, 법정 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라는 전통적 의미의 경비업무를 넘어 법원보안 전반을 포괄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명칭 변경 외에 실질적 권한과 구조 측면에서는 부분적 정비에 머문 측면이 있어 현재까지도 제도 운영상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II.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와 운영은 헌법, 법원조직법, 대법원규칙, 대법원예규 등 다층적인 규범 체계에 근거한다.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을 통하여 법원이 내부 질서와 사무처리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는 재판장의 법정질서유지권, 촬영·녹화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 파견, 감치 및 과태료 등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경위는 다른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과 달리 법원조직법 제64조에 별도의 설치 근거가 있고, 직무 내용 또한 다른 직렬과 차이가 있다. 이 점은 법원보안관리대의 통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III. 보안관리 권한의 근거

법원보안관리대의 보안관리 권한은 크게 법정경찰권과 청사관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정경찰권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한으로서 재판장의 법정질서유지권을 말한다. 청사관리권은 법원청사 내 질서유지와 위해행위 예방, 출입통제, 방호업무 등을 포괄한다. 현행 제도는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위해행위나 질서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보안장비 사용을 일정 부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의 범위는 시간적·장소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법정 외부나 청사 인근에서 재판관계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제2절 운영 현황

I. 인적 구성 및 근무현황

2025년 7월 1일 기준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전체 인원은 총 1,061명으로, 법원경위 116명, 보안직 55명, 보안관리직렬 856명, 청원경찰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법원보안관리대가 하나의 조직 명칭 아래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적 지위와 인력운영, 직무 범위가 다른 여러 직렬의 결합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보직순환, 업무분장, 승진기회, 지휘체계 형성 등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근무현황에서도 직렬 상호 간 업무 편차가 존재한다. 법원경위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권한을 근거로 법정보안 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하여 온 반면, 그 외 직렬은 주로 출입자 보안검색, 청사 내 소란행위 대응 등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법정보안과 청사방호 사이에 유기적인 보직 순환이 필요하나, 직렬별 법적 지위와 직무범위의 차이로 그 원칙이 제한되어 통합적 사무분담과 현장운영의 균형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

II. 물적 설비 현황

법원보안관리대의 물적 설비는 법원청사 출입관리, 위험물 탐지, 상황감시, 비상대응 및 현장 제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체계로서 공용장비와 개인장비로

구분된다. 공용장비에는 소형화물 투시기, 문형검색대, 휴대용 스캐너, CCTV, 비상벨 등이 있고, 개인장비에는 가스분사기, 삼단봉, 무전기, 요대 등이 포함된다.

보안장비 운용 매뉴얼은 소란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 분리 조치, 청사 밖으로 유도, 채증, 장비 착용 및 보고 등 기본적인 현장대응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장비별 사용 요건, 단계별 통제 방식, 사용 후 기록·보고 등 세부 기준은 유형력 행사 기준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적 설비의 실효성은 장비의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장비 운용 기준, 유형력 행사 기준,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절차가 함께 마련될 때 확보될 수 있다. 결국 장비별 사용 요건과 현장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비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III. 제복

제복은 단순한 피복이 아니라 법원보안관리대의 권한과 역할을 외부에 인식시키는 상징이자 동시에 실제 현장대응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기능적 요소이다. 현행 제복은 대원복 상·하의, 재킷, 모자, 넥타이, 부착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유형과 장비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법정근무와 청사보안 근무의 특성이 제복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활동성, 통신장비 사용의 편의성 등이 충분히 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제3절 사건·사고 발생 및 대처 현황

I. 사건 현황 및 분석

최근 10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는 총 1,01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응급환자가 453건으로 44.7%를 차지하였고, 욕설·난동 등 소란행위는 348건으로 34.3%, 무단 녹화·녹취가 70건으로 6.9%, 폭행·상해가 36건으로 3.6%, 자해·자살 시도가 23건으로 2.3%, 도주 16건으로 1.6%, 명령불응이 8건으로 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증감이 반복되면서 연평균 81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법정 내 질서침해가 여전히 상시적 위험요소이며, 단순 소란뿐 아니라 의료적 응급상황, 자해·자살 시도, 도주 등 다양한 성격의 사건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유형의 분포는 법정보안이 단순한 통제나 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욕설과 난동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심리 과정에서의 감정 폭발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녹화·녹취나 명령불응은 재판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의도적 권위 훼손의 성격을 갖는다. 응급환자와 자해·자살 시도는 보호조치와 응급대응 역량을 요구하며, 도주나 폭행은 즉각적 유형력 행사와 외부기관과의 공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건유형별 위험도와 대응수준을 구분하는 세분화된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II. 대처 현황 및 분석

최근 10년간 사건·사고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대응체계가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사건은 현장 통제나 사후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강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되거나 경찰 도착 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치 집행 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못하여 추가범행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유

형력 행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응을 주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법정 질서 회복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재판장과 재판참여인력, 사건관계인 보호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III. 법정 외 청사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및 조치

법정 밖 청사 내 사무실, 민원구역, 복도, 출입구 등에서도 소란, 위협, 난동이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정 외 공간은 법정과 달리 재판장의 직접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으므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자체적인 상황 판단과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청사 내부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직무질문 등 대응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출입통제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IV. 형사처벌 사례

법정 내 소란행위는 경미한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설득, 귀가 조치 또는 재판장의 퇴정명령으로 종료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정소동죄, 법정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 사례는 법정 질서 침해행위가 단순한 소란이나 사후 제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중대한 위해행위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정 인접 대기실, 이동·호송 과정, 출입검색 단계, 증인보호가 필요한 법정 등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즉각적인 제지, 분리·이동 통제 등 보호조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형사처벌 사례의 검토는 사후 처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입검색의 실효성 강화, 유형력 행사와 보호장비 사용 기준의 구체화 등

현장대응 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4절 청사방호 대책 현황

법원은 주요 보안사고를 계기로 여러 차례 청사방호 및 법정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2016년 인천지방법원 공무원 피습 사건 이후 전국 법원청사의 보안진단, 법원보안관리대 공통 매뉴얼 마련, 종합상황실 구축, CCTV·비상벨·문형검색대·소형화물 투시기 확충, 민원실 유리차단막 설치 등이 추진되었다.

2019년에는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투척 사건 등을 계기로 안전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등 개선 TFFT가 구성되어 청사구조 개선, 보안설비 보완, 보안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와 신변위협 및 피해 직원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2023년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FT에서는 청사 출입구 통제,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 시·군법원의 보안 강화, 특히 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 및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2024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 내 피고인에 대한 피습 사건을 계기로 검색장비 개선, 법정구조 보완, 법정 근무자의 상황대응 능력 강화, 보안인력 확충 및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법정보안 강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법정과 법원청사의 안전 확보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체로 시설적·운영상 보완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법원보안관리대의 권한 구조, 조직 운영체계, 인력 구성 및 현장대응 기준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청사방호의 실효성은 물리적 시설의 확충만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위험상황 발생 시 일관되고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추어질 때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능과 권한에 상응하는 조직·인사·제도적 규범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제3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제문제

제1절 조직 운영상 비효율성

I. 직렬 구성의 다원성

현행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경위, 보안직류, 보안관리직류, 청원경찰 등 여러 직렬이 함께 구성된 조직이다. 이러한 다원성은 제도 형성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각 직렬의 법적 근거(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청원경찰법)에 따른 기능적 차이는 법정 질서유지, 청사방호, 출입통제, 상황대응 등 보안업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II.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

첫째, 직렬 간 업무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동일한 보안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책임범위가 서로 다르며, 선호업무와 비선호업무에 관한 보직순환 원칙에도 제약이 있다. 그 결과 사무분담 편성 과정에서 직렬 간 업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법정경위가 다른 구성원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집행 등 재판절차와 직접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차이가 있다. 이는 동일 조직 내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불균등하게 만들고 실제 사건 대응 시 팀 단위 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셋째, 승진 불균형이 지휘체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진

다. 상위직급 정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직렬별 승진 구조가 상이하다면, 현장지휘와 관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풀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보안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조직의 지휘 및 업무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각급 법원에서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총무과장을 겸임하는 구조, 법원행정처에서 안전관리관이 비상계획 업무와 법원보안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는 구조는 일정한 행정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 운영이 보안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 보안업무는 단순한 지원업무가 아니라 정책기획, 교육훈련, 장비운용, 평가, 사고 분석, 대외 공조 등 전문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재난·안전 일반 업무에 부수되는 형태로 운영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전문영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직 운영상 비효율성의 핵심은 법원보안관리대가 형식상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한과 신분, 인사체계가 서로 다른 인력이 병렬적으로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통합적 지휘와 책임 있는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대응의 일관성 또한 저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렬 통합, 정원·직급 구조 조정, 독립적 지휘 직제 도입, 보안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2절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요건의 불명확성

I. 근거 및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5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원청사 내 위해행위 등을 제지하기 위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보안장비 사용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요건과 단계, 허용수단, 사후보고와 통제 절차 등은 충분히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장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II. 요건의 불명확성

유형력 행사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보안인력은 소극적 대응과 과잉대응의 위험 사이에서 부담을 안게 된다. 소극적 대응은 위험의 확대와 추가 범행을 낳을 수 있고, 과잉대응은 인권침해 논란과 사후 책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비교하면 법원 보안 분야는 정당성·필요성·상당성에 관한 구체적 단계화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법정 및 법원청사 보안 현장에서 유형력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실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가 규범적으로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서는 법률과 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체계를 통하여 유형력의 행사 요건, 단계별 대응수단, 장비 사용 기준, 교육 및 사후 통제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및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

I.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현행 보안관리 권한은 주로 법정과 청사 내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청사 인근에서의 위해 가능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신변보호, 재판관계인 보호, 외부 집단행동 대응 등에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다. 법

정경찰권과 청사관리권 모두 일정한 의미를 가지지만, 변화된 보안환경에 비추어 보면 사전·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II.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

기존 대책은 장비 확충과 시설 개선에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사건 발생 후 대응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건 대응 중심 TFT’의 구조적 한계로 보며, 상설적 책임부서 없는 대책이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지속적인 점검·보완이 어렵다고 평가한다.

결국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시설 확충을 넘어 법적 근거 정비, 조직 재구성, 권한 명확화, 상시적 점검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4절 제복

본 연구에서는 제복을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의 결합체로 이해한다. 제복은 조직의 정체성과 공권력의 존재를 외부에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근무자의 기동성·안전성·장비운용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제복의 변천과 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법원보안관리대 제복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실무자 인터뷰에서는 하복 착용 시 무전기 고정력이 약하고, 요대에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재킷 착용이 장비 활용을 방해하며, 단화의 기동성과 쿠션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제복이 상징성과 심미성의 외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현장 기능 중심의 설계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근무와 청사보안 근무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품목을 근무유형별로 차등화 하되, 색상·표식 등 핵심 요소는 통일하여 조직 정체

성과 대외 인지도를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제4장 외국 법원 및 국내 기관의 보안조직 현황

제1절 서론

비교법적 검토는 단순히 외국 제도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보안관리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대화하고 개선방향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법원 보안조직과 국내 기관의 운영 사례를 통하여 법적 근거, 권한체계, 유형력 행사 기준, 보안업무와 비상대비 업무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2절 주요국 법원 보안조직 현황

I. 미국

미국 연방법원의 보안은 연방마샬(U.S. Marshals Service, USMS)이 담당한다. 연방마샬(USMS)은 단순한 법정경비 조직이 아니라 법원보안, 법원 명령 집행, 신변보호, 이송, 체포 등 폭넓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법원보안 관리대가 사법부 소속인 것과 달리, 연방마샬(USMS)은 미국 법무부 산하 조직이지만, 연방 사법부 보안과 관련해서는 최종 권한(Final authority)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안요건 설정, 위협평가, 시설 및 인적 보호를 일관된 지휘와 기준 체계 아래 수행한다.

미국의 특징은 보안조직의 권한 근거와 기능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유형력 행사 기준은 연방마샬(USMS) 자체 지침뿐 아니라 법무부의 부서 공통 정책과 연동되어 체계화되어 있다. 그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대상자의 즉각적 위협 여부, 적극적 저항 또는

도주 시도 여부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객관적 합리성, 필요성, 최소한의 사용, 비례성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원보안과 관련한 물리적 행사를 개별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운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사례가 주는 첫 번째 시사점은 법원보안 기능이 전문조직과 명문화된 기준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유형력 행사는 단순히 허용 여부만을 정할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와 상황판단 요소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여 현장 판단의 기준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보안조직이 수행하는 법원보안, 신변보호, 이송 등 관련 기능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휘체계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II. 영국

영국에서는 사법절차와 법원 운영에 관한 법률 「Courts Act 2003」 등을 통하여 법원보안 담당자의 권한과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영국 사례의 핵심은 법원보안 인력의 권한 범위와 질서 유지 기능이 법률상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 법정 및 법원청사 보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법정 질서유지와 출입통제, 위험물 대응과 같은 보안업무가 법률상 근거와 절차를 가진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 사례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법원보안 담당자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보다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법원조직법상 근거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대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 범위와 행사요건의 불명확성이다. 영국과 같이 법률 단계에서 핵심 권한을 명시하고 하위 규정에서 절차를 보완하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III. 독일

독일은 법원보안 인력과 관련하여 권한체계, 유형력 행사의 법적 근거, 보안장비 사용, 비례성 원칙 등을 비교적 정교하게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독일 사례는 유형력 행사의 요건과 한계,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사법 경찰적 권한과의 관계 설정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유형력 행사 가능”이라고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단은 어떤 원칙 아래 통제되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독일 사례가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법원보안 인력의 유형력 행사 기준을 보다 단계화, 세분화하고 그 운용에 비례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제도는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권력 행사로서의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정도, 위해행위의 태양, 보호법익, 대체수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독일은 그러한 정교한 규범 설계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IV. 일본

일본은 법정 및 법원청사 보안 업무를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과의 공조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형력 행사 수단과 법정 질서유지 구조 역시 우리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사례의 특징은 법원 자체의 질서유지 기능과 외부기관 협조체계가 상호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능적으로 조합된다는 점이다. 특히 법정과 청사보안의 업무 특성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법정은 재판의 권위와 절차적 통제가 중시되는 공간인 반면, 청사는 출입통

제, 위험예방, 민원응대가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업무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인력 운용, 장비 배치, 외부기관 협조 방식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운영방식은 우리 제도의 기능적 설계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된다.

제3절 국내 기관별 보안조직 현황

국내 기관별 보안조직에 대한 비교 검토는 우리 법체계 안에서 보안조직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운영방식 아래 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법원보안관리대 제도의 개선방향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검찰청은 보안조직의 명칭과 법적 지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보안업무의 설치 근거, 출입통제와 질서유지 권한, 외부기관과의 관계를 일정한 규범 아래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특히 이들 기관은 기관의 기능과 공간적 특성에 따라 보안과 비상대비 기능을 조정하면서도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먼저 국회는 국회경위, 국회방호원, 국회경비대로 이어지는 다층적 방호 체계를 두고 회의장 내부 질서유지, 청사 내부 방호, 외곽 경비를 기능적으로 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부의 정부청사 보안 체계는 출입통제, 보안검색, 위험물 반입금지, 퇴거 등 청사보안의 기본 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도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청은 청사보안과 비상대비 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행정상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안업무의 전문성과 상시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내포한다. 결국 국내 사례는 보안업무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업무 성격에 따라 기능을 분화하거나 적절히 조정하는 조직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법원보안관리대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부 기관보다 제도적 기초는 상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입통제, 퇴거요구, 위해행위 제지 등 직무권한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는 충분히 법제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청원경찰법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준용 구조에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 기반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권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형력 행사 규정의 구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 기관들도 완결적이지는 않지만 출입제한, 행위 중지, 퇴거, 위험물 반입금지 등 기본 조치의 틀을 제도화하고 있는바, 법원보안관리대 역시 상황별 대응 기준과 절차를 보다 단계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의 조직적 분리 또는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청 사례에서 보듯이 두 기능이 동일한 체계 아래 통합 운영될 경우 보안업무의 전문성·지속성·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 역시 보안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기능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원보안관리대의 개선은 조직의 직무범위와 권한, 유형력 행사 기준, 보안장비 운용 등 규범적 기반을 정비하고 보안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5장 개선방안

제1절 법원경찰대 도입 방안

I. 도입 시 제반 검토사항

법원경찰대 도입은 법정 질서유지와 청사방호, 재판

관계인 보호를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체계 아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력한 제도 개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법원보안관리대가 다원적 직렬구조, 제한된 권한체계, 불명확한 유형력 행사 기준 등으로 인한 제약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법원경찰조직을 상정하는 논의 자체는 충분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법원경찰대 도입이 단순히 조직의 명칭을 바꾸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사법권 독립의 구조, 기존 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등 복합적 쟁점을 수반하므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권력분립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법원경찰대에 어느 범위까지 물리적 강제권과 집행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는 단순한 보안업무의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 내부의 질서유지 기능을 넘어 수사적 기능이나 광범위한 법집행 기능까지 부여할 경우 기존 검찰·경찰 체계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법원경찰대가 설치될 경우 어느 정도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대상 범죄나 직무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수사권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상 범죄 특성의 문제, 기존 수사기관과의 중복, 전문성 확보와 책임구조 설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보안조직의 실효성 강화를 이유로 곧바로 수사기능까지 결합하는 것은 제도 설계상 부담이 크다.

셋째, 재판지원 기능과의 결합 범위가 문제된다. 법원경찰대가 단순한 법정·청사보안에 머물 것인지, 구인영장 집행, 피고인 소재탐지, 재판관계인 신변보호, 집행관 집행현장에서의 원조 등 재판지원 기능의 전반으로 확대될 것인지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러한 기능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논의될 수 있으나 당장 이를 포괄적으로 제도화하기에는 인력, 예산, 교육·훈련, 권한 배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독립된 법원경찰조직은 단지 법적 근거만으로 작동할 수 없고, 별도의 채용체계, 계급 또는 직급체계, 교육·훈련, 장비, 지휘체계, 인권보호와 책임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 창설은 상징적 선언보다 훨씬 큰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수반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II. 도입 방안

법원경찰대 도입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입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능을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그중 법원보안의 본질과 직접 관련되는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법정 질서유지, 청사방호, 위해행위 제지, 고위험 상황 대응, 재판관계인 보호와 같은 핵심 보안기능을 중심으로 제도의 골격을 상정하고, 수사권이나 광범위한 집행권 부여 문제는 별도의 장기 과제로 두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특히 법원경찰대 도입과 관련하여 수사권 포함 여부, 구인영장 집행 및 소재탐지 권한 부여 여부, 집행관 집행현장에서의 원조 여부, 청원경찰 증원 방안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법원경찰대 논의가 단일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설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기능을 과도하게 확장하면 기존 국가 작용과의 중복 및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별도 조직 도입의 실익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 방안은 기능별 우선순위

를 정하고, 법원보안 본래 기능을 중심으로 단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입 방안은 ‘새로운 조직 신설’ 자체보다 ‘보안기능의 실질적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는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능적 통합, 지휘체계 보강, 유형력 행사 기준의 정립, 보안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이다. 따라서 법원경찰대 도입 논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먼저 보완하는 과정과 연결되어야 하며 곧바로 새로운 조직 모델만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법원경찰대 도입을 장기적 선택지로 열어 두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의 규범 정비와 조직개선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직렬 통합, 지휘체계 보강,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절차 마련과 같은 과제를 먼저 실현함으로써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고 그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법원경찰대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이라 정리할 수 있다.

제2절 조직 운영상 개선방안

I. 다원적 구성원의 통합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법원경찰, 보안직류, 보안관리직류, 청원경찰 등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인력들이 병존하면서 하나의 보안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원적 구성은 제도 형성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업무분담의 불균형, 직렬 간 보직순환의 제약, 승진구조의 차이 등이 현장 지휘체계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개선의 출

발점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아니라, 다원적 구성원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법원조직법 개정을 제안한다.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이후에도 법원경위는 여전히 법원조직법상 법정사무 집행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통합된 조직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법원보안관리대가 명목상 하나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와 구성의 원리를 재정비하여 보안업무를 하나의 통합된 전문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인신구속 집행 등 일부 업무가 특정 직렬에 부여된 법적 권한과 연계되어 있어 직렬 간 업무 배분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내부 사무분장의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직무권한의 법적 근거를 조정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능적 통합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을 연계하여 보안업무 수행 주체와 권한 범위를 일관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렬 간 정원 통합과 직급 간 정원 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보안관리직 7급 이상 정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장지휘와 운영관리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승진 불균형 문제를 단순한 처우 문제로 보지 않고 조직 전체의 지휘체계 취약성과 연결된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상위직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현장경험과 조직 이해를 축적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보안업무가 단기적·단편적 운영에 머무르게 될 우려가 있다.

II. 조직의 지휘계통 및 업무관리의 체계화

본 연구에서는 다원적 구성원의 통합과 더불어 지휘계통과 업무관리 체계의 정비를 별도의 중심 과제로 제시한다. 현재와 같이 보안업무를 지휘가 다른 행정업무와 겸임되거나, 보안정책 기능이 재난·안전 또는 비상계획 업무에 부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상시적 위험관리와 전문적 정책수립이 어렵다. 보안업무는 사건 발생 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계획, 장비운용, 교육훈련, 사후분석, 외부기관 협조 등 지속적인 관리기능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독립적 책임 체계 아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독립된 직제로 운영하고, 전임제 대장 및 부대장을 두는 방안의 규칙 및 운영예규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는 보안관리대장이 단순히 형식상의 책임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지휘와 조직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명백히 하는 취지이다. 각급 법원 차원에서는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는 정책기획, 업무 표준화, 평가·감독 기능을 갖춘 상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관리 측면에서는 보안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중요하다. 안전관리관이 재난·안전 업무와 법원보안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현 구조가 일정한 장점은 있으나 보안업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감독 및 정책수립·집행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종전의 사건 대응형 TFT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조직을 통해 제도개선과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안관리국과 같은 독립조직 설치를 검토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보안정책 전담 기능을 명확히 하는 단계적 추진 방식이 바람직하다.

결국 조직 운영상 개선의 핵심은 보안업무를 일반

행정의 부수기능으로 두지 말고 독립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진 영역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다원적 직렬구조의 통합과 지휘계통의 체계화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현장대응의 신속성·예측 가능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상호 연관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요건 마련

I.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

현행 법원보안관리대 제도에서 시급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유형력 행사 기준과 요건의 명확화를 꼽을 수 있으며 그 입법적 방안으로 가칭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법정과 청사 내 위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일정한 권한은 인정되지만 그 권한의 범위와 행사요건, 단계별 대응수단, 통제절차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필요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사후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직무집행법 제정의 취지는 첫째,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 범위를 독립적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위해행위 예방·제지, 퇴거 및 출입통제, 신체적 제압 등 실무상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며, 셋째,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인권보호와 책임통제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유사한 일반법을 단순히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법정 질서유지의 목적에 적합한 별도의 직무집행 기본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법률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직무의 목적과 기본원칙, 권한 행사의 시간적·장소적 범위, 위해행위 판단 기준, 단계적 대응원칙, 비례성·필요성·최소침해 원칙, 보안장비 사용의 일반 기준, 사

후보고와 감독,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장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될 경우 현장대원에게는 예측 가능한 판단기준이 제공되고 외부적으로도 보안업무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II.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

법률만으로는 현장대응에 필요한 세밀한 기준을 모두 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하위 규범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을 함께 제안한다. 이는 법률이 기본 원칙과 권한 근거를 정한다면, 규칙은 실제 현장 상황에서 어떠한 순서와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규칙에는 우선 위험 수준과 대상자의 행태에 따른 단계별 대응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적 제지, 출입 제한, 이동 제지, 보호장구 사용, 물리적 제압, 보안장비 사용 등 대응수단을 단계화하고, 각 단계의 대응 요건을 정함으로써 현장 판단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기준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찰청의 물리력 행사 기준은 원칙과 단계, 상황별 기준을 상대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역시 법원보안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최소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소극적 대응과 과잉대응의 위험을 모두 줄일 수 있다.

결국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과 유형력 행사 규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전자가 권한의 존재와 기본원칙을 정하는 상위 규범이라면, 후자는 그 권한을 실제로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작동규범이다. 두 규범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현행 제도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제4절 제복의 개선

I. 고려사항

제복 문제는 단순한 외형 개선의 차원을 넘어 보안 업무의 기능성과 상징성을 함께 좌우하는 실무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제복은 대외적으로는 법원보안 인력의 권한과 역할을 식별하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기동성·안전성·장비 휴대의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제복 개선은 현장대응 중심의 설계로 접근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복 상의의 장비 고정력, 재킷 착용 시 활동성 저하, 신발의 쿠션감과 기동성 부족, 계절별 근무환경에 대한 대응성, 법정근무와 청사보안근무의 차이 반영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보안 업무는 장시간 대기과 돌발상황 대응이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제복의 편의성과 활동성은 단순한 피복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대응 역량과 직결된다.

또한 제복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나치게 일반 행정직 복장과 유사하여 보안인력으로서의 식별성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과도하게 경찰 또는 군복과 유사하여 기관 고유성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결국 제복 개선은 기능성, 상징성, 품위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II. 단계적 추진 방안

제복 개선은 곧바로 전면적인 제복 체계 개편으로 접근하기보다 우선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복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복 문제는 실제 착용자의 경험과 직결되므로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법정근무자·청사보안근무

자·상황실 근무자 등 직무별 현장 의견 수렴, 장비 착용감과 계절별 착용 편의성에 관한 조사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복 개선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시제품 제작, 기능성 검토, 시범 착용, 디자인 조정 등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 추진단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체계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체계에는 법원행정처 담당부서, 각급 법원의 보안실무자, 제복·장비 담당자, 필요시 의류·디자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제복의 기능성, 식별성, 상징성, 품위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복 개선의 우선순위도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검정색 운동화 지급, 단화의 쿠션감 보강, 무전기 등 장비를 안정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보조장비의 개선과 같이 즉시 보완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기적으로는 하절기 간소복의 통일된 디자인 마련, 장비 휴대 조끼의 시범운영, 근무유형별 일부 품목 차등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상징성과 현장 기능성을 함께 반영한 제복체계 전반의 개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제복 개선의 핵심은 외관상의 변화가 아니라 법원보안관리대의 실제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보안장비 휴대와 즉시 대응성, 장시간 근무의 편의성, 법정의 품위 유지, 청사보안 근무의 기동성, 계절별 착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이 마련될 때 제복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대응 역량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 법적 근거, 인적 구성, 보안 장비와 제복, 사건·사고 대응 실태, 유형력 행사의 기준,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가 법정 질서유지와 청사방호의 기본적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복합화·고위험화된 보안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법원보안의 문제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나 장비 보강의 차원을 넘어 재판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으로 다원적 직렬구조로 인한 사무분담의 편차와 승진 불균형, 각급 법원 보안관리대장의 총무과장 겸임,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비상계획 업무와 보안관리 업무의 통합 운영으로 인한 지휘체계와 전담 관리체계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법정 및 법원청사 보안 현장에서 유형력 행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개선 방향을 조직, 권한, 절차, 운영기준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제안한다.

먼저 법원경찰대 도입은 법원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권력분립,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계, 권한 범위, 인력과 예산, 인권보호 장치 등 복합적인 쟁점을 수반하므로 중·장기적 선택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조직모델의 즉시 도입보다 현행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정비를

통하여 보안업무를 하나의 통합된 전문 영역으로 재구성하고, 직렬 간 정원 통합과 직급 간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지휘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보안관리대장의 독립직제화, 전임제 대장 및 부대장 설치, 보안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보안업무를 전문영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요건 마련을 가장 시급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본다. 현행 법원보안관리대 제도 아래에서도 일정한 보안관리 권한은 인정되나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권한의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절차와 수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범이다. 이에 따라 가칭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직무 범위와 기본원칙, 권한의 종류와 한계, 인권보호와 사후 통제 장치를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하고, 동시에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위험 수준별 대응단계, 허용수단, 사전경고, 사후보고, 평가와 점검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는 인권보호와 현장의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층적 규율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제복의 개선 역시 현장 대응력과 조직 정체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제복이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과 권한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기동성, 장비 휴대의 편의성, 장시간 근무 적응성, 계절별 기능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운동화 지급, 단화 쿠션 보강, 장비 부착 편의성 개선 등 즉시 보완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정근무와 청사보안 근무의 차이를 반영한 기능성 중심의 제복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업무별 근무 조건

과 환경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소재 등 구성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 확보를 포함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하면 법원보안관리대의 개선은 조직구조의 통합, 지휘체계의 정비, 권한 규범의 명확화, 유형력 행사 기준의 체계화, 제복과 장비의 기능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결국 현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한 규범 정비와 조직개선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단계적 개선이 축적될 때 법정 질서유지와 청사보안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재판기능의 안정적 수행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